

# CHECK LIST (VER. 2024)

구분	기준	-	건축사설계 확인서	한국건축규정 (세움터)	착공	감리대상 (비상주)	구조감리	업무대행	사용승인
신축	신고 (100㎡미만)				●				●
	허가 (100㎡이상)		●	●	●	● (자가)165	3층전이	●	●
증축	신고 (85㎡미만)				●				●
	허가 (85㎡~100㎡)		●	●	●	● (자가)165	3층전이	●	●
용도변경	신고 (100㎡미만)					-			
	허가 (100㎡미만)		●			-			
	신고-대수선 (500㎡이상)			?	●	-		●	●
	허가-대수선 (500㎡이상)		●	?	●	●	해당시	●	●
대수선	신고					-			
	허가		●	?	●	●		●	●

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[제22조](#)를 준용한다. 다만,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 1. 19.>

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([대통령령](#)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의 설계에 관하여는 [제23조](#)를 준용한다.